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한규 · 민병덕

박희승 · 김현정 · 허성무

장철민 · 조계원 · 문진석

이춘석ㆍ허 영ㆍ문대림

신영대 • 백선희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,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 (IMO)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,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,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 (新造)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~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.

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중 "5조원"을 "10조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본금) 공사의 자본금은 5	제5조(자본금) <u>10</u>
<u>조원</u> 으로 하되, 정부 등이 출자	<u>조원</u>
한다.	<u>.</u>